

‘26. 7.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립 도 서 관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2026-58
번 호	

제출연월일 : 2026. 7. .

제 출 자 : 김 제 시 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시립도서관의 교환·이관·폐기·제적 도서의 기증 및 활용기준과 사용자에 대한 편면적 위약금 부과 조문을 정비하여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시립도서관 시설 사용료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관한 조항 정비 (안 제10조의2)
- 자료의 기증에 관한 조항 정비 (안 제13조)
-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조항 정비 (안 제18조)
- 시립도서관 시설 사용료 정비 (별표 1)
 - 복사·프린터 인쇄 수수료 구분(흑백 ⇨ 흑백·컬러) 및 스캔 수수료 신설 등

3. 참고사항

-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나. 규제심사 대상 여부 : 부
- 다. 예산수반 여부 : 부
- 라. 성별영향평가 대상 여부 : 부

- 마. 자치법규 검토(부서의견조회) : 여
- 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대상 여부 : 여
-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 아. 입법예고 기간 : 2026. 5. 22. ~ 6. 11.(20일간)

4. 따로 붙임

- 가. 일부개정조례안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 해당 없음
- 라. 자치법규 검토결과 : 이견 없음
- 마. 입법예고 결과 : 이견 없음
- 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사. 관련 법령 발췌서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 및 제47조, 「소비자기본법」 제25조, 「도서관법」 제45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7,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1~3조 및 별표 Ⅱ
- 아. 참고자료
 - 권익위 권고사항 의결문 및 개선방안
 - 합동평가 지표 확정과제 알림 공문 및 추진방안
 - 전북자치도 내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
(공공도서관의 도서 제적·폐기 및 무상배부, 소비자권익제한 관련)
 - 타 시·군 조례 발췌서 (광주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남원시)
- 자. 현행 조례
- 차. 방침결정문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규정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배부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배부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은 개인”을 “개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은 자료가 중복 등의 이유로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재기증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료 기증의 범위 및 기증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등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사용료 반환)”을 “(사용료 등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② 운영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제2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별표 1과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별 표 1]

시립도서관 시설 사용료

1. 기본 사용료

시 설 명		기 준	금 액 (원)		비 고
시 청 각 실		1 회	20,000		1 회 기 준 4시 간 이 내
구 분	규 격	기 준	금 액 (원)		비 고
			흑 백	컬 러	
복 사	A4	1 매	40	200	
	B4	1 매	50	400	
프린터	A4	1 매	50	200	
	B4	1 매	50	400	
스 캔	A4, B4	1 매	50	50	

2. 냉 · 난방 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 준	금 액 (원)	비 고
시 청 각 실	1 회	10,000	1회 기준은 4시간 이내로 한다. (준비시간 포함)

[별지 제3호서식]

도 서 관 () 사 용 변 경 승 인 신 청 서

1. 신 청 자 주 소 :

단 체 명 :

성 명 :

2. 20 . . . 귀 도서관 () 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 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변경내역

가. 변경 전

나. 변경 후

20 년 월 일

신 청 자

김 제 시 립 도 서 관 장 귀 하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 보존·활용 공간의 효율화 2. 자료 접근·이용의 편의 제공 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오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에 따른	제10조의2(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배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배부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3항을 준용하여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제13조(자료기증) 시장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선정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18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제16조제2호·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신청인이 사용일 전 5일 전까지 이용하지

제13조(자료기증) ① 개인 -----

-----.

②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은 자료가 중복 등의 이유로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재기증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료 기증의 범위 및 기증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등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18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전
액 반환

2. 신청인이 사용일 전 5일 이내
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
고한 경우 위약금 1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

3. 신청인이 이용일 이후에 이
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이용일을 제외한 잔여일
의 해당금액을 반환

4.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 사용
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반환

<신 설>

제20조(손해배상) ① (생략)

② 운영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위
약금 배상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
육시설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제20조(손해배상) (현행 제1항과
같음)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 해당 없음

전북권 4대 도시로 준비하는 김제



김 제 시



수신 시립도서관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6A전북김제021)

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시립도서관-3345 (2026.5.26.) 와 관련됩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은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하므로,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교육가족과장 양

주무관	이예	여성가족팀장	양	교육가족과 과장	2026. 5. 26.
협조자				장	김숙영
시행	교육가족과-18878	(2026. 5. 26.)	접수	시립도서관-3412	(2026. 5. 26.)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6906	팩스번호	063-540-4016	/	taejvb@korea.kr / 비공개(5,7)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 자치법규 검토결과 : 이견 없음



결 과 보 고 서

문서번호 시립도서관-3624

제 목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보고

시립도서관-3323(2026.05.26.)호와 관련하여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부서 의견 조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조회기간: 2026.05.26. ~ 06.05.
2. 조회방법: 공문발송
3. 조회내용: 규정 개정에 대한 취지 설명 및 의견 수렴
4. 조회결과: 의견없음. 끝.

2026. 6. 8.

주무관	백승현	운영지원팀장	김정지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	-----	--------	-----	--------	-----

협조자

☐

전북권 4대 도시로 똥비하는 김제



(경유)

제 목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보고

시립도서관-3166(2026.5.18.)호 관련하여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1. 조 례 명 :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2. 공 고 기 간 : 2026.05.22 ~ 2026.06.11. (20일간)
2. 공 고 방 법 : 김제시보(제548호), 김제시 홈페이지(제2026-6호)
3. 의 견 수 렵 : 의견없음
4. 보고자 의견 :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이 없음에 따라 이후 행정절차를 이행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끝.

주무관 박승현 운영지원팀장 대결 2026. 6. 12. 시립도서관장 전경

협조자

접수

우 54392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서남단길 161, (요충동, 김제시립도서관) / <http://www.pimje.go.kr>

전화번호 063-540-4142 팩스번호 063-540-4144 / bmy1983@korea.kr / 부분공개(5)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6월은 호국보훈의 달,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



김 제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6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알림

기획감사실-8353(2026.6.22.)호와 관련하여 2026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최일시 : 2026. 6. 18.(목) 09:00
2. 개최장소 : 부시장실
3. 참석위원 : 10명 *대리출석 2명(경제진흥과장, 도시과장)
4. 심의안건 : 총 8건(조례 7, 규칙 1)
5. 의결결과 : 원안가결 8건

연번	심의 번호	소관부서	안 건 명	의결결과
계	총 8건 (조례 7, 규칙 1)			
1	2026-21	행정지원과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2026-22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2026-23	회 계 과	김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원안가결
4	2026-24		김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5	2026-25	투자유치과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2026-26		김제시 산업단지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7	2026-27	환 경 과	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2026-28	시립도서관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붙임 2026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자료 각 1부. 끝.

김 제 시 장

수신자 김제시의회의장, 행정지원과장, 회계과장, 투자유치과장, 환경과장, 시립도서관장

주무관	이재현	의회법무팀장	이해라	기획팀장	대결 2026. 6. 22. 기획감사실장	전결
함초자					오경준	
시행	기획감사실-8398			접수		
무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3723	팩스번호	063-540-3578	/ kirus@korea.kr	/ 부문공개(5)	

더 특별한 내일, 기획도시 김제

□ 관련 법령 발췌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712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①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 3. 29., 2017. 10. 31.>

1.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평가와 그 결과의 공표
 2.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권고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 ③ 정책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기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6. 3. 29.>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위원회에 통보하

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⑤ 정책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이행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⑥ 정책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3. 29.>

⑦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정책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3. 29.>

「도서관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090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45조(도서관 인력·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와 도서관 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도서관자료의 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33조(도서관 인력·시설·자료)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7]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제33조제3항 관련)

1.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

- 가.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 나.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 다.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 가.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 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
- 다.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
- 라.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정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 2025. 12. 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5. 12.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I, **별표 II**, 별표 III, 별표 IV와 같다.

<별표 II>

품 목 별 해 결 기 준

< 체육시설소비자 권익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3개 업종) >

④체육시설업, ⑤레저용역업, ⑥할인회원권업 (2-1)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고
1) 시설 이용 및 강습 등에 관한 계약내용 또는 광고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 전액 환불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은 제외 • 회원제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2) 기기 및 시설의 고장, 이전·휴업·정원초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 반환금액(아래 4)의 계약해지 시 기별 계약방법에 따른 반환금액 적용) 환불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 대체	
3) 신체상 피해 발생	○ 배상액 배상	
4) 위 1) 2) 이외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이용개시일 이전 - 이용개시일 이후 •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 환불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 반환금액 환불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 $\frac{\text{이미 경과한 기간(일수)}}{\text{계약상 이용 기간(일수)}}$)]+위약금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 $\frac{\text{이미 이용한 횟수}}{\text{계약상 이용 횟수}}$)]+위약금	*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함 *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 입회금 • 가입비 • 부대 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함.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음
5)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이용개시일 이전 - 이용개시일 이후 •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 환불 • 반환금액=이용료 - 위약금 ○ 반환금액 환불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 $\frac{\text{이미 경과한 기간(일수)}}{\text{계약상 이용 기간(일수)}}$)] - 위약금	* 위약금은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④체육시설업, ⑤레저용역업, ⑥할인회원권업 (2-1)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 이미이용한횟수 계약상이용횟수)] - 위약금	
④체육시설업, ⑤레저용역업, ⑥할인회원권업 (2-2)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 사은품 반환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 사은품 미사용 시 : 해당 사은품 반환 · 사은품 사용 시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울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단, 단순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않음.) ·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존상태로 반환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시: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하지 않음. ○ 체육시설업 -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등 ○ 레저용역업 - 이벤트 주관, 주말농장, 영화예매 등 ○ 할인회원권업 - 여러 업종의 판매업소를 가맹점으로 확보한 후, 회원을 모집하고 일정 금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업종		

□ 참고자료 : 권익위 권고사항 의결문 및 개선방안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5-312호

의 안 명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

의 결 일 2025. 9. 8.

주 문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 규정에 따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각 교육청 교육감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IV. 개선방안

1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도서 제적·폐기 및 무상배부에 관한 조례 제정 또는 조항 신설

【예시】 무상 배부 조례 개정 사례

- 「○○○○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2025. 4. 22.개정, 2025. 5. 12. 공표)
 -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은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3. 폐기대상 도서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도서
 4. 기타 도서관장이 기증 필요성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

2 세부 절차 및 인력 활용 방안 강구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제적·폐기 도서 무상배부와 관련한 세부 절차, 대상자 선정 방법, 폐기 도서 선별작업 등에 필요한 인력 확보(활용) 방안 마련

【예시】 자원봉사자 활용 방안

- 자원봉사자 등 도서 선별작업 등에 적극 활용
 - ※ 2023년 공공도서관 자원봉사자 수는 207,102명으로 전년 대비 16.6% 증가 「2024년('23년 기준) 전국도서관통계」
- 선별 작업 등 참여 자원봉사자에게 폐기도서 우선 무상배부



□ 참고자료 : 합동평가 지표 확정과제 알림 공문 및 추진방안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6년 합동평가 지표(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을) 확정과제
알림

1.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201(2026. 2. 12.)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 「2026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3-11-64.가.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을)와 관련된 확정과제(붙임1)를 안내드리오니,
3. 각 담당부서 및 시군에서는 주요 과제 유형별 개선 가이드(붙임2) 및 지표 설명자료(붙임3)를 참고하시어 '26년 합동평가 지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개선과제(확정과제) 1부.
2. 주요 과제 유형별 개선 가이드 1부.
3. 2026년 실적 합동평가 지표 설명자료 1부. 끝.



수신자 건설정책과장, 유산관리과장, 일자리민생경제과장, 군산시장(기획예산과장), 익산시장(기획예산과장), 정읍시장(기획예산실장), 남원시장(감사담당관), 김제시장(기획감사실장), 무주군수(기획조정실장), 순창군수(기획예산실장), 고창군수(기획예산실장), 부안군수(기획감사담당관)

주무관	장안재	규제혁신팀장	유재욱	자치제도과장	전광 2026. 2. 23.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치제도과-837	(2026. 2. 23.)	접수	기획감사실-2617	(2026. 2. 23.)
우	549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청 (효자동3가)	/ http://www.jeonbuk.go.kr		
전화번호	063-280-4143	팩스번호	063-290-6800	/ jyj0623@korea.kr	/ 대국민 공개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Go Beyond, Create Harmony"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초화

I

추진배경 및 경과

-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통한 지역시장 경제활성화를 위해 '07년부터 경쟁제한적인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 추진
- '19년('18년 실적)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부터 자치법규 개선율을 지표*로 포함시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 실효성 제고
- * (지표명)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율('19, '21~'22) →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23~)

II

'26년 추진계획

- 17개 광역지자체와 소속 기초 지자체 수를 고려(광역×2 + 기초×0.7)하여 195건의 경쟁 및 소비자권익 제한적 규제개선 추진(전년同)
-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선정한 195개 과제는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 부득이 이행이 곤란한 과제는 자율 개선과제로 대체 추진

< '26년 유형별 개선과제 내역 >

구분	계	진입제한	사업자차별	경쟁능력제한	소비자권익제한
건수	195	37	48	18	92

< '27년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개요 >

- (지표명)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개선율
- (목표) 평가산식에 따른 개선율 계산 결과 90% 이상
- (평가산식) 개선과제 수용률 30% + 이행률 70%
 - * 단, 이행률 계산시 지자체 자율 개선과제를 이행과제로 인정(건당 0.5건)하여 합산
- (변경사항(전년대비)) 의회일정 불확실성* 등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여 과제 이행 인정기준을 연내 의회제출에서 연내 입법예고 이행으로 완화

Ⅲ

주요 과제 유형별 개선안(예시)

◆ 본 개선안은 경쟁 및 소비자권익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의 주요 유형별로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개선안을 예시한 것으로, 과제 이행을 위한 실제 개선안 확정 시에는 과제 취지, 개선안 예시와 함께 지자체별 상황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권익제한

1. 불공정한 시설 사용료(대여료, 이용료 등) 반환

- (과제취지) 시설 사용료 등 반환의 형평성 문제(사용자 사유로 인한 사용 취소 시에만 위약금 부과 등) 개선
- (개선방향) 아래 예시 등을 참고로 시설의 성격, 실제 운영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특성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
 - ① 관계법령(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본문, 별표 등에 반영)
 - ② 관리자 사유, 사용자 사유로 인한 이용 취소 모두에 대해 위약금 면제 등 동일한 기준 적용
 - ③ 시설을 무상 사용으로 전환(사용료, 위약금 등 규정 삭제)

※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정안은 개정 전 공정위-지자체 담당자 간 사전협의(메일, 유선 등)를 통해 개선취지 부합 여부 등 확인

< 개정안 예시1 >

현 행	개정안(예시)
제00조(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시설물이 고장, 훼손 등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 철회 시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적으로 사용 중지한 경우	제00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② 운영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 개정안 예시2 >

현 행	개정안(예시)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료의 전액 반환 가. 1일 사용권을 구입하고 사용시간 전에 환불 요구하는 경우 나. 시설관리자의 귀책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된 경우 2. 사용료의 일부 반환 가.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기준 1일 이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나.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 당일과 그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다. 제2호에 의한 사용료 반환은 별표2와 같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실외체육시설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환사유 외의 사용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 이용료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 개정안 예시3 >

현 행	개정안(예시)
제00조(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평생학습관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전부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부터 4일 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전부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 전부터 전날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100분의 80 4. 사용자가 사용시작일 이후에 사용을 취소·중단하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 남은 일수에 대한 사용료 중 100분의 50	제00조(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평생학습관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전부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부터 4일 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전부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용료 반환하는 경우 외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 전북자치도 내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

시군명	조례명	공공도서관의 도서 제적·폐기 중 무상배부 관련 규정 마련 여부	
		여	부
전주시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
군산시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
김제시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
익산시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
정읍시	정읍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
남원시	남원시 공공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
완주군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
진안군	-		
무주군	무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장수군	장수군 군립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
임실군	임실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
순창군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고창군	고창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	
부안군	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

□ 참고자료 : 전북자치도 내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

구 분	조례명	소비자권익제한 관련 사용료·대관료 규정 정비 여부	
		여	부
전 주 시	해당없음		
군 산 시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
김 제 시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
익 산 시	해당없음		
정 읍 시	해당없음		
남 원 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	
완 주 군	해당없음		
진 안 군	해당없음		
무 주 군	무주군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		○
장 수 군	해당없음		
임 실 군	해당없음		
순 창 군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고 창 군	해당없음		
부 안 군	부안군 부안누에타운 설치·운영 조례		○

□ **참고자료 : 타 시 · 군 조례 발췌서** (광주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남원시)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6.02.10]

(일부개정) 2026.02.10 조례 제2013호

제17조(기증자료)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 자료부에 등재·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 또는 대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작은도서관 및 문화시설 등에 재 기증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구청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8.20., 2023. 3. 29.>

②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부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6. 2. 10.>

대구광역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 2026. 2. 20.]

[대구광역시조례 제6465호, 2026. 2. 20., 일부개정]

제11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자료 기증) ①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은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기증 및 접수 절차 등은 「도서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은 자료가 중복 등의 이유로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재기증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기증 자료의 범위 및 기증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등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2.20.]

제12조(도서관의 자료 기증) ① 도서관의 폐기 및 제적 자료는 시민 독서활동 장려를 위하여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 등에 기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따른다.

③ 그 밖에 자료 기증의 범위 및 기증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등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2.20.]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6.04.07]

(일부개정) 2026.04.07 조례 제2272호

제40조(대관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2. 시의 행사·미술관의 운영상 대관이 어렵게 된 경우 : 전액
3. 대관자가 대관사용일 14일 전까지 대관 취소를 신청할 경우 : 전액
4. 삭제 <2026. 4. 7.>

② 제1항 이외의 대관료 반환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6. 4. 7.>

□ **현행 조례**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 2024.11.05]

(일부개정) 2024.11.05 조례 제171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자질함양과 정서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김제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개정 10.10.11 조례제693>
2. "관내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대출·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관외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4. "시설사용료"라 함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 복사 및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휴관) ① 도서관의 일반열람실을 제외한 휴관일은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로 한다.

②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③ 휴관일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전문개정 05. 9. 26 조례506]

제4조(입관료) 도서관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

제5조(입관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자 또는 관내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자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입관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자 <개정 2024.11.5.>
4. 그 밖에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11.5.>

제6조(열람 및 대출) ① 자료를 열람·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료실 근무자의 안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②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2에 따른 도서관회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③ 자료 대출기간 및 대출권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5. 9. 26 조례제506, 2018.12.21>

④ 자료를 복사 및 인쇄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05. 9. 26 조례제506>

제6조의2(도서관회원) 도서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12.21>

1.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2. 김제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과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공공도서관자료 상호대차협정에 의한 자료대출신청자

[본조 신설 05. 5. 27 조례490]

4. 김제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등록자 <개정 2018.12.21>
5. 전국민이 하나의 이용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 <개정 2018.12.21>

제7조(대출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한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3. 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개정 2024.1.5.>

제8조삭제 <2018.12.21>

제9조삭제 <2018.12.21>

제10조(자료의 분실·훼손 등의 책임) ①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케 한다.

②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내용 상 유사도서로써 변상할 수 있다. [신설 05. 5. 27 조례490]

③ 동일 및 유사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의 3배액으로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05. 5. 27 조례490>

④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05. 5. 27 조례490]

[제목개정 2024.11.5.]

제10조의2(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0.10.11 조례제693>

1. 자료 보존·활용 공간의 효율화
2. 자료 접근·이용의 편의 제공
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 신설 05. 5. 27 조례490]<개정 10.10.11 조례제693>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오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

우에는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3항을 준용하여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신설 10.10.11 조례693]

제11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품목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한 취급을 하되, 위탁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제12조<삭제 2024.11.5.>

제13조(자료기증) 시장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선정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제목개정 2024.11.5.]

제14조(사용승인)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시설사용승인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5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승인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관장은 사용승인신청내용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

다.

제15조(사용불승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의 관리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에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승인의 취소 등)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 제한, 정지, 변경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1. 이 조례 지시에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24.11.5.>
3.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사용목적 및 승인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5.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제17조(사용료) ① 「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1.5.>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승인서(변경승인서) 교부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제16조제2호·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신청인이 사용일 전 5일 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전액 반환
2. 신청인이 사용일 전 5일 이내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위약금 1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 <개정 2024.11.5.>
3. 신청인이 이용일 이후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이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해당금액을 반환
4.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환 <개정 2024.11.5.>

제19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 국가기관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
2. 50퍼센트 감면 :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각종 행사 <개정 2024.11.5.>

제20조(손해배상) ① 시설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 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5.>

제21조(이동도서관 운영) 도서관 영역을 확대하고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자료를 적재한 차량 등을 이용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1.5.>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21>

③ 당연직위원은 관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8.12.21>

④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관련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1., 2021.9.17., 2024.11.5.>

제23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5.>

[제목개정 2024.11.5.]

제24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필요 시 관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12.21>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24.11.5.]

제25조 (운영위원의 임기 및 해촉)[전문개정 2018.12.21]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관장은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전출·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5조의2(운영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본조 신설 05. 5. 27 조례490] [제목개정 2024.11.5.]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제25조의3(강사위촉 및 수당지급) ① 관장은 강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05. 5. 27 조례490]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받은 허가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 ③ (다른 규칙의 개정) 김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김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김제시립도서관운영조례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05. 5. 27 조례4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5. 9. 26 조례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0.10.11 조례6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56)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12.5 조례 제1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9호, 2018.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711호, 개정 2024.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8.12.21., 2024.11.5.>

시립도서관시설사용료

1. 기본사용료

시 설 명		기 준	금 액 (원)	비 고
시 청 각 실		1 회	20,000	1 회 기 준 4시 간 이 내
복 사	B4	1 매	50	
수수료	A4	1 매	40	
프린터	A4	1 매	50	
수수료				

2. 냉 · 난방 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 준	금 액 (원)	비 고
시 청 각 실	1 회	10,000	1회 기준은 4시간 이내로 한다. (준비시간 포함)

[별표 2] <삭제 2024.11.5.>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18.12.21>

[별지 제 2호 서식]

도서관시설사용승인신청서

사 용 자	주 소			
	직업또는단체명		전 화 번 호	
	성명또는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사용시설및부대시설				
사 용 기 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일간		
시 설 사 용 료				
사 용 목 적				
행사주요내용				
기 타				
김제시립도서관운영조례 제1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설사용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인 김 제 시 립 도 서 관 장 귀 하				

[별지 제3호 서식]

도 서 관 () 사 용 변 경 승 인 신 청 서

1. 신 청 자 주 소 :

단 체 명 :

성 명 :

2. 19 . . . 귀 도서관 () 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변경내역

가. 변경전

나. 변경후

20 년 월 일

신 청 자

김 제 시 립 도 서 관 장 귀 하

(별지 제4호 서식)

도서관시설사용 ☐ 승인서
☐ 변경승인서

사 용 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성별)	
사용할 시설 및 부 대 시 설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20 년 월 일 부터 (일간) 20 년 월 일 부터		
기 타				
김제시립도서관운영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립도서관 시설 사용을 ☐승인합니다. ☐변경승인 합니다. 20 년 월 일 김제시립도서관장 직 인				

□ 방침결정문

문서번호	시립도서관 2951	주무관	운영지원팀장	도서관장	복지환경국장	부시장	시장	결 재
보존기간	5년	백승현	김정자	황원용	박금방	김재현 박수영 이혜서		
결재일자	2026. 5. 7.	협조 기획간사선장 이명준 의회법무팀장 이혜라						

제100호 시립도서관
비상하는 김제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